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및 실태조사 실시 등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39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용자에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2
2. 기간통신사업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발간	13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14.

다. 회부연월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용자에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0 신설 등).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 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 부개정법률 <u>제32조의20(최적요금제의 고지) ①</u> <u>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u> <u>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u> <u>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u> <u>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u> <u>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u> <u>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u> <u>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u> <u>(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u> <u>려야 한다.</u> <u>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u> <u>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u> <u>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u> <u>고시한다.</u>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 ----- -----. ----- ----- -----.
1. ~ 4의21. (생략)	1. ~ 4의21.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2. 제32조의20제1항에 따른</u> <u>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u> <u>한 자</u>

□ 검토의견

○ 최근 스마트기기, 콘텐츠 등 모바일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본 통신기능 외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된 요금 형태가 일반화되었고, 단말기 지원금·선택약정·결합서비스 가입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고 위약금이 부과되면서 요금체계의 복잡성이 한층 증가하였음.¹⁾

- 2020년말 기준 유·무선 통신,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계약이 1,975만건에 달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할인, 혜택 및 위약금이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KISDI 정책동향』, 2022.6.

상이한 실정임.

-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양한 이용자의 필요에 맞춰 많은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어, 이처럼 많고 복잡하게 존재하는 통신 요금제도로 인하여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가 무엇인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동통신사별 요금제 현황>

구분	SKT	KT	LG U+
5G 요금제	○ 5GX 플래티넘 ○ 5GX 프리미엄 ○ 5GX 프라임 등	○ 5G스페셜/베이직 ○ 5G 심플 등	○ 5G 프리미어 에센셜 ○ 5G 미니 등
LTE 요금제	○ T플랜 맥스 ○ T플랜 스페셜 ○ T플랜 안심2.5G 등	○ 데이터 선택 요금제 ○ 순 모두다올레 요금제 등	○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 데이터 걱정 없는 요금제 등
청소년 요금제	○ 0플랜 스몰 ○ 0플랜 히어로	○ Y틴 요금제 등	○ 청소년 요금제 등
시니어 요금제	○ T플랜 시니어 안심2.8G ○ T플랜 시니어 세이브 등	○ 실버 요금제 등	○ 시니어 요금제 등

자료: 각 통신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2025. 3

- 이동통신 3사(SKTEL, KT, LG U+)는 고객군별 차별화된 요금제를 통하여 특정 계층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요금제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각 통신사는 연령대, 데이터 사용량, 서비스 이용 패턴에 따라 5G 요금제, LTE 요금제, 청소년 요금제, 시니어요금제를 구분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자신의 연령별, 사용 패턴별 최적화된 요금제를 찾을 수가 있어, 실질적인 요금 부담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유사한 요금제 간의 미묘한 차이와 요금제 구조의 복잡화로 인하여 소비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존재함.
-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업에 이익이 되는 특정 요금제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여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²⁾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역무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보 비대칭 해소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

2)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내용은 입법 취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용자와 이동통신사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자가 각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수많은 요금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금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요금제와 이용자의 사용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에서 이용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택의 실패로 인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특히,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제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강하게 발생하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하지 않는 요금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동통신사가 과거 해당 계층의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한다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EU는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 개정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계약만료일 전에 약정만료, 해지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음(참고 1 참조).

-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통신사업자는 계약 자동 연장 전에 계약상의 의무 종료 시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자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최적 요금제 조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최종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4월 기준으로 회원국 중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EECC 원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조항을 도입하여 통신서비스의 계약만료 및 최적요금 고지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음³⁾.
- 특히, 이동통신 소비자 단체는 통신요금 체계가 결합할인, 약정할인, 단말기 지원금 등으로 인해 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판매나 정보 비대칭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의 정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기반한 맞춤형 최적 요금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개정안의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는 통신비 절감, 정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2022. 6. 28.

보격차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사용 패턴 기반 요금제 추천으로 불필요한 고가요금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정보 비대칭에 취약한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최적요금제 안내로 통신 요금제 구조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고 비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냄.

○ 다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⁴⁾)는 통신사업자 및 정부와 함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초이스(통신요금 정보포털)⁵⁾을 운영 중에 있음. 민간 부문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의해 최적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요금정보포털에서는 많은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등)의 요금제 중에서 이용자의 이용패턴(서비스 종류, 나이, 데이터, 음성 등)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ssociation, KTOA)

5) <https://www.smartchoice.or.kr/smc/>

<통신요금정보포털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화면>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전체메뉴](#)

[휴대폰 구매](#)
[요금제 찾기](#)
[환급/혜택](#)
[통신생활 가이드](#)
[통신정보](#)

[이벤트](#)
[고객센터](#)

[home](#) > [요금제 찾기](#) >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휴대폰 구매

요금제 찾기

·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 모바일 요금제 비교

·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 인터넷/IPTV 요금제 비교

· OTT 결합상품

· 약관 가이드

· 요금제 둘러보기

환급/혜택

통신생활 가이드

통신정보

이동전화 이용패턴을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의 최근 3개월 평균 월사용량을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여자사업자 보기](#)

서비스 (필수)

5G

LTE

나이 (필수)

만 직접입력

세

12세 18세 29세 34세 50세 65세 70세 80세

데이터 (필수)

직접입력

GB

5GB 15GB 30GB 70GB 100GB 200GB 250GB

기본데이터 소진 후 이용속도 >

음성

무제한

분

50분 100분 200분 300분 500분 800분

문자

무제한

>

선택약정할인 ☒

상세옵션 >

선택 초기화

검색

자료: 통신요금정보포털(<https://www.smartchoice.or.kr/smc/>) 홈페이지

- 또한, 사업자 측 이해관계자들은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이익을 고려하여 자사의 특정 요금제(예: 부가서비스가 많이 포함된 요금제)를 우선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추천 시스템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용자가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동

통신사에서 자사의 요금제를 주로 추천하는 경우 현재 이용자가 적은 알뜰폰(MVNO)⁶⁾ 사업자에게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동 개정안 제30조의2제2항에서는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과 방법’의 경우에는 고시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내용’의 경우에는 최적요금제 고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시행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위임 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이 통과 시 최적요금제 고지 방법·내용 등의 세부사항 수립 시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6)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는 자체적인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MNO, Mobile Network Operator)의 네트워크를 임대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동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0 신설 조항은 입법자의 의도, 비례원칙 및 법체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범자를 전기통신사업자 전체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기통신사업자 중 최적요금제의 적용을 받는 고지 대상 수권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용자별 성향과 가치, 수요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 조건의 요금제 고지가 어려우며, 고지된 요금제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피해 우려가 있고, 자사 요금이 주로 추천되는 경우 이용자가 많은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또한, 맞춤형 요금추천제는 스마트초이스와 2025년 6월 출시 예정인 개인별 요금제 추천 서비스(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시민모임은 가정 내 통신요금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 선택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데, 동일 조건의 공통된 기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최적의 요금제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소비자연맹은 동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는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 절감, 정보격차 해소, 선택권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 중심의 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 주기, 방법, 대상 등 세부 기준 마련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동 개정안의 이용자의 정보비대칭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며, 이동통신 소비자 단체에서도 최적 요금 고지로 인한 요금 절감, 정보비대칭 해소, 선택권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스마트초이스 등 민간에서 최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며, 자사 요금이 주로 추천되는 경우 이용자가 많은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있어서,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임.

2. 기간통신사업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발간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1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1(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웠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입법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패턴, 요금제 선택 경향, 소비자 불만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다 합리적인 통신 정책(요금인하 유도, 경쟁 촉진,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동통신 등의 이용자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최적의 요금제, 서비스 품질 정보, 소비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얻음으로써, 통신사와 이용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용자에 대한 요금체계 정보 제공과 정부의 통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 중 일부는 영업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분석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단체 등은 요금제 세분화, 다양한 청년·고령층 요금제 출시 등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져 요금제 비교·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분석보고서 발간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소비자시민모임은 통신사의 신뢰성

강화 및 최적요금제 고지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통신사-이용자 간 정보격차 해소가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업자의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이용요금/행태/조건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효율적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와 정부의 통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1 유럽연합 전자통신규제지침 요금고지 관련 Article 105(3) 조항

▶ Article 105 Contract duration and termination

3. Where a contract or national law provides for automatic prolongation of a fixed duration contrac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ther than number-independent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and other than transmission services used for the provision of machine to-machine services,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fter such prolongation, end-users are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with a maximum one-month notice period, as determined by Member States, and without incurring any costs except the charges for receiving the service during the notice period. Before the contract is automatically prolonged, providers shall inform end-users, in a prominent and timely manner and on a durable medium, of the end of the contractual commitment and of the means by which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ddition, and at the same time, providers shall give end-users best tariff advice relating to their services. Providers shall provide end-users with best tariff information at least annually

문 의 처

02)6788-5225